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필모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4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4. 27.

발 의 자 : 정필모 의원

찬 성 자 : 강득구 · 강민정 · 강병원
강선우 · 강준현 · 강훈식
고민정 · 고영인 · 고용진
권인숙 · 권칠승 · 기동민
김경만 · 김경협 · 김교홍
김남국 · 김두관 · 김민기
김민석 · 김민철 · 김병기
김병욱 · 김병주 · 김상희
김성주 · 김성환 · 김수홍
김승남 · 김승원 · 김영배
김영주 · 김영진 · 김영호
김용민 · 김원이 · 김윤덕
김의겸 · 김정호 · 김종민
김주영 · 김진표 · 김철민
김태년 · 김한정 · 김희재
남인순 · 노웅래 · 도종환
맹성규 · 문정복 · 문진석
민병덕 · 민홍철 · 박광온
박범계 · 박상혁 · 박성준
박영순 · 박완주 · 박용진
박재호 · 박 정 · 박주민

박찬대 · 박홍근 · 백혜련
변재일 · 서동용 · 서삼석
서영교 · 서영석 · 설 훈
소병철 · 소병훈 · 송갑석
송기현 · 송영길 · 송옥주
송재호 · 신동근 · 신영대
신정훈 · 신현영 · 안규백
안민석 · 안호영 · 양경숙
양기대 · 양이원영 · 어기구
오기형 · 오영환 · 오영훈
우상호 · 우원식 · 위성곤
유기홍 · 유동수 · 유정주
윤건영 · 윤관석 · 윤영덕
윤영찬 · 윤재갑 · 윤준병
윤희중 · 윤후덕 · 이개호
이광재 · 이동주 · 이병훈
이상민 · 이상현 · 이성만
이소영 · 이수진 · 이수진^(비)
이용빈 · 이용선 · 이용우
이원욱 · 이원택 · 이인영
이장섭 · 이재정 · 이정문
이탄희 · 이학영 · 이해식
이형석 · 인재근 · 임오경
임종성 · 임호선 · 장경태
장철민 · 전용기 · 전재수
전해철 · 전해숙 · 정성호
정일영 · 정청래 · 정춘숙

정태호 · 조승래 · 조오섭
조응천 · 조정식 · 주철현
진선미 · 진성준 · 천준호
최강욱 · 최기상 · 최인호
최종윤 · 최혜영 · 한병도
한정애 · 한준호 · 허 영
허종식 · 홍기원 · 홍성국
홍영표 · 홍익표 · 홍정민
황운하 · 황 희 의원
(17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(이하 “문화방송”이라 함)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,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6조 및 제9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42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이사회에”를 “운영위원회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이사장”을 “운영위원장”으로, “9명의 이사와”를 “25명의 운영위원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이사장은 이사회에서”를 “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”를 “운영위원은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이사장을”을 “운영위원장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이사장은”을 “운영위원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사장이”를 “운영위원장이”로, “이사가”를 “운영위원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이사장은”을 “운영위원장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이사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이사회를”을 “운영위원회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”를 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이사장은 이사회를”을 “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이사회”를 “운

영위원회의”로, “이사장은”을 “운영위원장은”으로, “이사회를”을 “운영위원회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이사회는”을 “운영위원회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이사회에”를 “운영위원회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이사회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한다.

다만,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의 사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10호의2에 규정된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,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사장 후보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공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이사회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사회는”을 “운영위원회는”으로 하며,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“이사회가”를 “운영위원회가”로 한다.

10의2.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

제11조제2항 중 “이사회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, “이사가”를 “운영위원장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이사가”를 “운영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4호 중 “이사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사장의 임기는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정관)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이사회에</u> 관한 사항 5. ~ 10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4조(정관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운영위원회에</u> ----- 5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임원)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<u>이사장</u>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 의 <u>이사</u> 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② (생략) ③ <u>이사장은 이사회에서</u> 호선(互選)한다. ④ <u>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</u>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. ⑤ (생략) ⑥ <u>이사장을</u>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(非常任)으로 한다.	제6조(임원) ① ----- ---- <u>운영위원장</u> ----- <u>25명</u> <u>의 운영위원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</u> ----- ④ <u>운영위원은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에 따라</u>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운영위원장을</u> ----- -----.

제7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(생략)

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.

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원의 직무) ① 운영위원장은-----

-----.

② 운영위원장이-----

-----운영위원이-----

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운영위원장은-----

-----.

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---

-----운영위원

회를-----.

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

포함한 운영위원으로-----.

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

-----.

-----운영위

원회의-----

운영위원장은-----운영위

원회를-----.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
신설>

<신 설>
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④ 운영위원회는-----
----- . 다만,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
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
송사업의 사장 후보자 추천에
관한 사항은 제10조제10호의2
에 규정된 시청자사장추천평가
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
를 추천하고, 재적 운영위원 3
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한다.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
회와 운영위원회의 사장 후보
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
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
행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
사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
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
는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별도의 공론조사 방식
을 통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
할 수 있다.

⑥ -----운영위원회에-----
----- .

⑦ 운영위원회의-----
---, -----
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
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
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
결한다.

1. ~ 10. (생략)

<신설>

11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
다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사무처) ① (생략)

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
두되,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
사장이 임명한다.

③ (생략)

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
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
사장이 임면(任免)한다.

제14조(자금의 용도 및 관리) ①
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
사용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
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
심의·의결한 사업

-----운
영위원회의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
위원회는-----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0의2.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
회의 설치와 운영

11. -----운영위원회가-----

제11조(사무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운영위원회의-----
----운영위원장이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운
영위원장이-----.

제14조(자금의 용도 및 관리) ①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--운영위원
회가-----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